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857
----------	-----

제출년월일 : 2004. 8. 16.

제 출 자 : 정호용위원외 4명

1. 수정이유

-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 제출된 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 및지원조례안중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정보완하여 개선코자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명칭에 관한사항
- 법인의 명칭에 관한사항(안 제2조)
- 출연금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출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5조의 2)
- 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5조의 3)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를 “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 엑스포조직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 중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 엑스포조직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출연금의 운용)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u>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u>” (이하 “<u>엑스포</u>”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u>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u>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①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u>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u>” (이하 “<u>재단</u>”이라 한다)라 한다.</p> <p>②-③(생략)</p> <p>제3조(사업) (생략)</p> <p>제4조(법인의 재산) (생략)</p> <p>제5조(운영비등 지원) <u>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신설></p>	<p><u>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 ----- ----- <u>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u> ----, ---- -----.</p> <p>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①----- ----- “<u>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u>” ---- -----.</p> <p>②-③(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사업)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법인의 재산)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출연금) <u>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의2(출연금의 운용) <u>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p> <p>1. <u>출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u></p> <p>2. <u>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신설></p> <p>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생략)</p> <p>제7조(보고, 검사 등) (생략)</p> <p>제8조(공무원 파견) (생략)</p> <p>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생략)</p> <p>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생략)</p> <p>제11조(시행규칙) (생략)</p> <p>부 칙(생략)</p>	<p>제5조의 3(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재 단은 매회계년도의 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개 시 30일전까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보고, 검사 등)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공무원파견) (제정과 같음)</p> <p>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부 칙(제정안과 같음)</p>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고성공통 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3. 엑스포 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엑스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2(출연금의 운용)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출연금운용계획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검사 등) ①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 파견) ①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